

## 4 재정운용계획

###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고성군의 2016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1	10,730
여성정책추진사업	4	3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10,2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88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성인지 예산 사업 목록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계			10,730
여성정책추진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일반회계	71
여성정책추진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일반회계	265
여성정책추진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일반회계	29
여성정책추진사업	도개발(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일반회계	2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축산행정 업무추진	일반회계	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어업인교육	일반회계	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관광지 환경개선	일반회계	38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일반회계	30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	일반회계	3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구강건강 관리	일반회계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위생업소 단속	일반회계	2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군민 아카데미 운영	일반회계	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안전문화운동 사업	일반회계	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활근로사업	일반회계	1,23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일반회계	1,8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일반회계	12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회계	44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일반회계	2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봉사자 관리	일반회계	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일반회계	8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반회계	1,9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농업자치대학운영(보조)	일반회계	2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해외연수	일반회계	1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경남사회조사(보조)	일반회계	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일반회계	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맞춤형중소농기계지원	일반회계	2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보육교직원 교육	일반회계	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	일반회계	1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일반회계	57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반회계	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인 문해교육	일반회계	17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일반회계	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	일반회계	3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친환경농자재 지원	일반회계	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일반회계	1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기계화영농 육성 및 지원	일반회계	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자체)	일반회계	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사방사업(보조)	일반회계	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일반회계	2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사회복지특별회계	146
자치단체특화사업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일반회계	88

##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군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고성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73,549	9,836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b>총액</b>		9,836	
행복나눔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838	계속사업
"	경로당 난방기 구입	27	"
문화관광체육과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130	"
안전총괄과	소하천유지관리 및 개보수	1,750	"
"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120	"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도로개설	2,950	"
건설교통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로 및 용·배수로 등)	2,394	"
"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1,567	"
농업정책과	귀농세대 정착지원	60	"

###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고성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3	89	213	251	371,841	353,388	18,453
의회사무과	1	1	2	2	887	835	52
기획감사실	1	6	15	12	10,979	11,965	△986
종합민원실	1	4	11	6	544	531	13
행정과	1	5	15	20	59,139	54,806	4,333
재무과	1	3	5	11	9,164	4,262	4,902
주민생활과	1	13	24	22	16,744	17,373	△629
행복나눔과	1	6	21	21	56,373	57,391	△1,018
문화관광체육과	1	4	7	20	13,089	14,771	△1,682
항공산업경제과	1	8	18	11	14,192	13,359	833
안전총괄과	1	5	5	9	10,158	11,664	△1,506
환경과	1	3	5	6	5,135	4,905	230
녹지공원과	1	2	15	14	9,704	11,128	△1,424
해양수산과	1	2	7	7	14,257	9,651	4,606
도시디자인과	1	5	10	11	18,971	15,881	3,090
건설교통과	1	3	10	12	20,808	19,298	1,510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보건소	1	2	9	10	5,868	6,903	△1,035
농업정책과	1	4	8	9	13,663	14,816	△1,153
농업지원과	1	1	2	10	18,337	19,080	△743
농축산과	1	2	8	10	9,975	9,739	236
생명환경농업과	1	2	2	8	2,862	2,852	10
관광지사업소	1	2	3	7	17,947	12,078	5,869
상하수도사업소	1	2	3	9	38,075	35,643	2,432
박물관사업소	1	4	8	4	2,634	2,233	401
고성읍	0	0	0	0	402	364	38
삼산면	0	0	0	0	114	114	0
하일면	0	0	0	0	134	133	1
하이면	0	0	0	0	155	154	1
상리면	0	0	0	0	157	150	7
대가면	0	0	0	0	141	141	0
영현면	0	0	0	0	134	126	8
영오면	0	0	0	0	116	118	△2
개천면	0	0	0	0	130	129	1
구만면	0	0	0	0	122	110	12
회화면	0	0	0	0	174	148	26
마암면	0	0	0	0	135	135	0
동해면	0	0	0	0	232	216	16
거류면	0	0	0	0	190	186	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98	62.43	21.54	27.82	52.82	127.2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부단체장	36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2	23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3	6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의원국외여비	36	36	
지방보조금		17,174	13,534	3,64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94	89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24	824	
공무원 일·숙직비		164	164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515	△2,907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692	1,515
인건비 절감	-	29
지방의회경비 절감	18	54
업무추진비 절감	18	3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4	174
지방청사 관리·운영	1,790	1,227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352	△2,90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61	△75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38	△2,170
경상세외수입 확충	539	83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85	△631
탄력세율 적용	△227	△192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고성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고성군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5
조기집행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	80
조기집행	2015년 하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	125